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가능성과 사생활 존중권[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기를 가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청구인의 폭력이 1주를 초과하는 노동불능상태(interruption totale de travail)[2)]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의 면제(dispense de peine)[3)]를 받았다. 청구인은 형을 면제받았음을 원용하면서 검사에게 범죄전력처리파일(fichier de traitement d'antécédents judiciaires)에서 청구인의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판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의 경우에만 파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8조를 원용하면서 청구인의 이유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Chambéry 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6년 11월 21일 형 면제 선고[4)]는 형사소송법 제230-8조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결 내렸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2017년 8월 1일 헌법재판소는 파기원으로부터 '조직범죄, 테러리즘과 테러리즘 자금지원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을 증진시키는 2016년 6월 3일 법 제 2016-731호'(이하 '2016년 6월 3일 법')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30-8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받았다. 2017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규정에 대해 폐지시점이 연기된 위헌결정을 내렸다.

2. 쟁점(법률문제)

---

1) Décision n° 2017-670 QPC du 27 octobre 2017.
2) [형법 제222-11조] 사람을 폭행하여 1주일 초과의 노동불능상태를 초래한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률상 면제만 인정되고 재판상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형사제재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형법 제132-59조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형을 감면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315면.

검사의 통제 하에 경찰 및 헌병대는 수사지휘(commission rogatoire)[5]에 관한 수사 및 조사 도중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일화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문(형사소송법 제230-8조)은 무죄 판결의 경우, 검사가 정보 저장을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해당파일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혐의 없음(non-lieu) 혹은 불기소(classement sans suite) 결정의 경우에는 검사가 개인정보 삭제를 명령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문은 무죄,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청구인과 같은 형 면제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삭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동 사건은 무죄, 혐의 없음 혹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는 가능하나 그 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결정요지

(1)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은 제청된 사건 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을 심판한다. 제청사건은 2016년 11월 21일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기각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파기원으로 상고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일 법률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30-8조에 대해 제소 받았다.[6]

(2) 형사소송법 제230-8조는 경찰 및 헌병대가 사용할 수 있는 범죄전력처리파일과 관련이 있다. 해당조문은 다음과 같다.

---

5) 공조촉탁은 예심판사가 다른 예심판사, 판사 및 사법경찰에 대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공조촉탁은 그 실질이 수사지휘이므로 예심판사 및 판사에 대한 것은 공조촉탁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것은 수사지휘로 번역함.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139면, 각주 34.

6) 형사소송법 제230-8조는 2011년 3월 14일에 제정되었고 이후 2012년 3월 12일 법률명령 제2012-351호로 첫 번째 개정이 있었고, 2016년 6월 3일 법률에 의해서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당사건에서 파기원은 심판대상조문이 어떤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심판대상조문의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제청사건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 2016년 6월 3일 법률 개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230-8조가 심판대상조문이다. Commentairede la décision n°2017-670 QPC du 27 octobre 2017, Conseil constitutionnel, p.12.

[제1항] 개인정보처리는 특히 죄과(罪科)의 새로운 결정(requalification judiciaire)의 경우 삭제, 보충, 수정을 요청하는 관할 검사의 통제(감독) 하에 수행된다. 죄과의 새로운 결정을 위한 정정(수정)은 정당하다. 검사는 1개월 이내에 삭제 또는 정정(수정)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무죄결정이 최종판결이 되는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개인정보 저장을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검사가 종국적인 무죄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저장을 명령하면 해당 피고인에게 통보된다. 검사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삭제를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혐의 없음 혹은 불기소처분 결정은 정보저장의 대상이 된다.[7]

정보저장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정보는 치안법 제L.114-1조, 제L.234-1조 내지 제L.234-3조와 '1995년 1월 21일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8] 제17-1조에서 규정한 행정수사의 맥락에서 조회되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저장을 명령하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검사의 결정은 범죄행위의 성격과 정황 또는 범죄자의 인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제2항] 검사에 의한 개인정보의 삭제 및 수정결정은 삭제 및 수정규정에 따라 모든 자동화 처리 담당자에게 통지되고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정보 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제3항] 개인정보의 삭제 및 수정에 대한 검사의 결정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4항] 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230-6조[9]에서 언급한 개

7)

	원칙	예외
무죄결정	정보삭제	검사가 저장을 명령하면, 정보저장 가능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정보저장	검사가 삭제를 명령하면, 정보삭제 가능

8)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e la sécurité(LOPS)
9) [형사소송법 제230-6조]

인정보 자동화 처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이 무죄,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범죄전력처리파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형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심판대상조문이 저장된 파일의 성격, 파일 보존기간, 파일의 목적 및 파일 사용범위를 고려할 때, 사생활 존중권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 따라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은 형사소송법 제230-8조 제1항에 대한 것이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5) '헌법재판소 조직법률을 규정하는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23-2조 제3항[10]과 제23-5조 제3항[11]의 결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판결이유(motif)와 주문(dispositif)에서 이미 합헌으로 선언한 법률규정에 관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 형사소송법 제230-8조는 '2011년 3월 14일 국내 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12]로서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10일 결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범죄인 수색, 경찰 및 헌병대 서비스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1° 예비수사, 현행범 수사 및 모든 중죄·경죄 및 5등급 위경죄와 관련하여 수행한 조사

a) 공공안전 혹은 평온 교란

b) 사람, 재산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침해

2° 제74조에서 규정한 사망원인 조사절차 또는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종원인 조사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통계조사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0) 다투어지는 법률규정이 사정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결이유와 주문에서 합치된다고 선언되지 않았을 것.

11) 헌법재판소는 제23-2조 1°(다투어지는 법률규정이 소송에 적용되거나 소추의 기초를 구성해야 할 것)과 2°(다투어지는 법률규정이 사정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결이유와 주문에서 헌법에 합치된다고 선언되지 않았을 것)에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고, 당해 사건이 새로운 문제이거나, 진지성을 가지는 경우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제소 받는다.

정의 설시 11 내지 13에서 해당조문을 심사했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합헌결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제230-8조 제1항은 특히 범죄전력처리파일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유와 관련하여 2016년 6월 3일 법률로써 개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전에 합헌결정한 조문과 다르므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은 적법하다.

[본안판단]

(7)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하 1789년 인권선언) 제2조[13]는 사생활 존중권을 내포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존, 조회 및 전달은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적절하며 비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형사소송법 제230-6조에 따라 경찰 및 헌병대는 모든 중죄·경죄 및 5등급 위경죄[14]와 관련하여 수행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에 대한 자동화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15] 동법 제230-7조 제1항[16]에 따라 이러한 처리는 가해자 혹은 그러한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혹은 가능성 있는 징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12) Loi n°2011-267 du 14 mars 2011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LOPPSI)

13) 모든 정치적 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소유권·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14) 프랑스 위경죄(contraventionnelle) 구분

범죄의 분류	범죄의 심각성
1등급	명예훼손 및 모욕
2등급	완전노동능력상실(ITT)을 가져오지 않는 비의도적인 신체상해
3등급	폭력의 위협
4등급	동물 혹은 사람에 대한 경중한 폭력
5등급	8일을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을 야기하는 고의적 폭행 혹은 애완동물에 대한 잔인한 살인

15)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실종된 사람 및 의심스러운 사람의 정보도 저장된다.

16) [형사소송법 제230-7조 제1항]
제230-6조에서 규정한 처리는 연령제한 없이 제230-6조 1°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한 가해자 혹은 공범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혹은 가능성 있는 징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9) 심판대상조문에 따라 이러한 정보들은 관할 검사의 통제 하에서 운영된다. 종국적인 무죄결정이 내려지면, 검사가 개인정보를 저장할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관련된 사람의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검사는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시에도 개인정보 삭제를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9조[17]를 적용하여 판사는 이러한 처리의 실행 및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판사도 검사와 같은 삭제권을 가진다. 확인된 판례에 따라 무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보 삭제의 기회를 가진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police administrative)[18]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사람들에게 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처리 및 엑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는 사법조사 및 특정 행정조사를 돕는 수단을 위임하여 범죄행위자 수색과 공공질서 침해예방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추구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범죄전력처리파일에 중요한 증거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혹은 특정 범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입법자는 이 파일에 특히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R.40-26조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호적, 직업 혹은 가족관계 및 안면인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사진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

---

17) [형사소송법 제230-9조]
① 동법 제230-6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시행 및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는 제230-8조의 적용을 담당한다.
② 해당 판사는 직권으로 혹은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삭제를 할 수 있다. 판사는 검사와 같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 내에서 개인정보의 삭제, 수정 또는 저장 권한을 가진다. 관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죄과(罪科)의 새로운 결정을 위한 수정은 정당하다. 판사는 1개월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③ 이러한 권한 수행을 위해, 자동화 처리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삭제 또는 수정에 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파리 항소법원 예심부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

18) 공서유지를 위해서 행정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감시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조직적 의미에서 경찰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2008, 592면.

19) 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사람들은 약 9,500,000명이고 해당 파일에 대한 책임은 내무부장관이 가진다. 저장되는 정보로는 신분, 별명, 가족관계, 친자관계, 국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호적, 인상착의, 회사명, 사업분야 등이다(형사소송법규칙 제R.40-26).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러한 정보는 보통 20년간 보관되나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길게는 40년 동안 보관될 수 있다.

(11) 둘째, 범죄전력처리파일은 모든 중죄·경죄 및 특정 5등급 위경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많은 수의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

(12) 셋째, 입법자는 범죄기록파일 내에 저장되는 정보의 최대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R.40-27조는 범죄의 성격과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이러한 정보가 5년에서 40년 동안 저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형법상의 범죄를 확인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며 가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행정경찰을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14) 심판대상조문은 무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형사소송에 연루된 사람들로부터 범죄기록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 삭제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박탈하여 사생활 존중권에 비례하지 않는 침해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0-8조 제1항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위헌결정 효력]

(15) 헌법 제62조 제2항은 "제61-1조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공포 시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장래의 시기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규정이 발생시킨 영향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들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헌선언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포된 날에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 제62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게 심판대상규정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재검토를 미리 고려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폐지일을 정할 권한과 그 효과를 시간적으로 연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16) 헌법재판소는 의회와 동일한 성격의 일반적인 권한(pouvoir général d'appréciation)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확인된 위헌성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들을 지적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위헌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는 범죄기록파일에 등록된 무죄판결,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정보 삭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과도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5월 1일까지 위헌조항의 폐지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